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신탁계약서

\_\_\_\_\_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서 규정한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과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퇴직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는 개인퇴직계좌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신탁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4.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합니다.
  5.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위탁자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6.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신탁금액)

- ① 위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에 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신탁하기로 합니다.
-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타 자산관리계약으로 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6조에 의한 해지일, 제18조에 의한 신탁 계약이전일, 제19조에 의한 신탁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제5조 (신탁관계인)

- ① 이 계약의 위탁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한 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합니다.
-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6조 (서류의 제출)

위탁자는 이 계약 체결시 사용자로 하여금 제1조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 ① 위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수탁자가 정한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수탁자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 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하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수탁자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신탁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② 위탁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법 제15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하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 ⑤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합니다.

####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예탁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신탁금의 지급)

- ①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수탁자는 수익자의 중도인출 사유 발생 시,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이 계약에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할 사유 발생 시 타 자산관리계약으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수익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하 "급여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금전을 지급합니다.
- ⑤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징구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 세금 징구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 제12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및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금액에 가산하고 제11조에서 정한 지급, 제16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해지, 제19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시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 제13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세금, 사무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단,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구합니다.

### 제16조 (중도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해지 요청 시
  -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4. 수탁자의 사임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제2항의 일반중도해지 시에 수탁자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제17조 (수탁자의 사임)

-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③ 수탁자 사임의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탁자 사임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재산을 새로운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수탁자 사임으로 인하여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도록 합니다.

### 제18조 (신탁계약의 이전)

- ① 위탁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할 경우, 수탁자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전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③ 신탁계약 이전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재산을 계약이전 받는 수탁기관에게 교부하고 사무인계 합니다.

### 제19조 (신탁의 종료)

-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 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

### 제20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 운용관리기관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퇴직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2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7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인감신고)

위탁자는 위탁자의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합니다.

### 제25조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2. 위탁자의 주소,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6조 (면책)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이 신탁과 관련한 제 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기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처리
- 2. 위탁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신탁사무처리
-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신탁업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신탁

자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지연 또는 누락

**제27조 (계약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부속협정서를 작성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계약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계약의 변경)**

사정상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한 뒤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 및 관련법령, 신탁업법 및 관련 법령,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1조 (기타)**

이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탁자는 위탁자, 운용관리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주소 :  
성명 : (인)

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1)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_\_\_\_\_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_\_\_\_\_ 년 월 일 체결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이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탁보수 : 계약서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 2.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서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 3. 계약이전수수료 : 계약서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제2조 (수수료 징구방법 및 납부주체)**

- ① 제1조의 수수료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신탁재산 매각통지를 받아 신탁재산에서 취득합니다.
- ② 제1조의 수수료별 징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보수

가. 신탁보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연 0.4 %를 곱하여 계산하며, 수탁자가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신탁보수는 계산기준일에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 취득하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재산 매각금액에서 신탁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탁자의 재량에 의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1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신탁보수를 취득합니다. 이때, 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은 직전 신탁보수 계

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신탁보수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

가. 징구대상 : 계약체결일로부터 중도해지신청일까지 1년 미만 계약에 한함

나. 계산기준일 : 중도해지신청일

다. 징구일 : 중도해지일

라. 수수료 : 계산기준일 전일의 신탁재산평가액 × 1.0 %

마. 징구방법 : 신탁재산에서 징구

3. 계약이전수수료

가. 징구대상 : 계약이전신청계좌

나. 징구일 : 계약이전일

다. 수수료 : 15,000 원

라. 징구방법 : 신탁재산에서 징구

4. 제1호 내지 제2호의 퇴직연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주소 :

성명 : (인)

수탁자 주소 :

성명 : (인)